생수시판 허용,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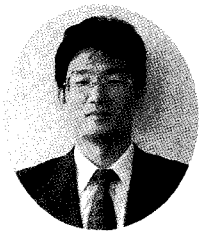

曺再雨
〈한국일보 사회부기자〉

최근 정부가 광천음료수(일명 생수)의 국내시판허용을 결정함에 따라 환경처 실무자들은 광천음료수의 수질기준과 각종 시설기준을 만드느라 부산하다. 그러나 광천음료수의 국내시판이 광천음료수업무가 보사부에서 환경처로 넘어오기 직전에 허용되어 환경처의 광천음료수관련 업무를 맡을 조직정비가 늦어지고 광천음료수의 수질과 용기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광천음료수업자들과 앞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업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환경처는 광천음료수의 시판이 환경처의 수돗물정책과 깊은 함수관계를 갖고 있어 광천음료수의 수질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에 대해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계속 표류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미 광천음료수에 대한 정책방향을 규정한 음용수관리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이에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바로 이 시행규칙에 수질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몇가지가 민감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현재 광천음료수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광천음료수 수질기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천음료수의 수질기준을 적어도 수돗물보다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강물 등 각종 오폐수에 오염된 강물을 원수로해서 정수한 수돗물보다는 당연히 광천음료수는 지하암반에서 나온 것이므로 수질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처는 광천음료수의 수질기준이 수돗물의 수질기준인 음용수수질기준과 적어도 내용면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처는 광천음료수의 수질기준을 강화할 경우 광천음료수가 수돗물보다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수돗물정책의 근본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일부 부유계층이 비싼 돈을 내고 먹게될 광천음료수를 수돗물과 차별화할 경우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특히 광천음료수에 대해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의 생수(生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광천음료수와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같게 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둘째로는 광천음료수의 용기문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용기는 1ℓ 이하 부터 18.9ℓ 까지 다양한데 이중 오랫동안 마개를 열어놓을 경우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하는 18.9ℓ 짜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수도연구소가 국내 5개 유명회사의 광천음료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18.9ℓ 용량의 경우 3~18도의 상온에서 5일이 지나면 세균수가 절반이상이 음용수수질기준(1㎖당 1백마리이하)을 두배(1백70~1백90마리)가량 초과했다. 또 7일이 지난 뒤에는 수질기준을 최고 4배(4백마리)까지 초과했으며 10일후에는 단 1개사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을 다섯배(5백10마리)까지 초과, 아예 「세균배양기」가 돼버렸다.

이들 18.9ℓ 용량 광천음료수의 유통기한은 30일이며 가정에서 보

통 10—15일 동안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고 광천음료수 판매량의 80%이상이 18.9ℓ짜리이다.

이처럼 세균이 번식하는 것은 광천음료수가 대기에 노출되어 마개를 열고 닫으면서 미생물이 침투하는데다 수원자체가 지하수이므로 영양물질이 많이 녹아있어 미생물 번식을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8.9ℓ짜리 대형용기의 유통제한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18.9ℓ용기에 담긴 광천음료수를 일주일정도 먹게 되나 일반 사무실은 3일 이내에 다 소모시킬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무실용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몇일이 지나면 세균이 많이 번식하지만 이 세균들이 모두 병원성 세균이 아니므로 인체에 반드시 해롭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은 일반세균이 번식한다는 것은 병원성세균의 배양가능성이 높은 것이므로 가정에서 만큼은 2ℓ이하의 적은 용기를 배달토록 하는 등 보완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하는 것이 여러차례의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는데도 용기문제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비난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

환경처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 환경전문가들은 광천음료수에 대한 환경처의 정책이 이처럼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업자의 입장이 아닌 국민건강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할 경우 험난한 파도를 오히려 순탄하게 타고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어떤 방안을 선택하던간에 업자 혹은 국민들로 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셋째로는 이미 광천음료수 업자들이 지하수 시추공을 마구잡이로 박고있어 초정리 등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우물 등에서 지하수가 말라버렸다고 호소하는 등 지하수의 고갈과 지하수의 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하천과는 달리 지하수는 민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의 경우는 지하수십리에서 수백리까지 걸쳐서 분포한 경우가 많아 어느 한명의 토지소유권자가 지하수를 끌어 올릴 경우 인근의 다른 토지소유자의 지하수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인근 주민들은 업자들로 인해 자신의 지하수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꼴이 되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법률의 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처는 이밖에도 광천음료수에 함유되어 있는 방사능물질규제나 외국생수수입규제 수질부담금 부과문제 등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이중 어느 하나의 정책이라도 삐걱거릴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광천음료수에 대한 환경처의 정책이 이처럼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업자의 입장이 아닌 국민건강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할 경우 험난한 파도를 오히려 순탄하게 타고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